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7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개정·시행('17.7.13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,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 개정 (안 제4조)
-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적합하도록 정비 (안 제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개정·시행('17.7.13.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,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4조제2항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 중 제3호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·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”을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”으로 개정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제7조(심의위원회 기능)제1항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, 추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
 - 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중, 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%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“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개정하였으며,
 - 그 밖에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4조제2항제2호, 안 제5조제3항제4호, 안 제6조제3항, 안 제9조제2항, 안 제10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, 연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 개정 (안 제4조)

나.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적합하도록 정비 (안 제5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7. ~ 9.2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·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”를 “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”을 “예산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은”을 “예산 담당 부서장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4조(심의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른 법령에 <u>의하여</u>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</p> <p>3. 「지방재정법」 <u>제37조의 규정</u>에 의한 투·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、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<u>각호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심의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

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(생략)
- 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2인
- 3. (생략)
- 4. 기타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
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%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예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예산총괄담당주사가 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、② (생략)

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9조(심의요청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2명
- 3. (현행과 같음)
- 4. 그 밖에 -----

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-----
----- 예산
담당 부서장-----
-----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그 밖에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심의요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
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용역결과 관리) 주관부서 장
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
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
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, 예
산편성총괄담당부서장은 용역성과
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
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
다.

제13조(비밀누설금지) 용역과제심의
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
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은
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
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별
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
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한다.

-----.

제10조(용역결과 관리) -----

----- 예산
담당 부서장은-----

-----.

제13조(비밀누설금지) -----
----- 그 밖에 -----

-----.

제14조(수당 등) -----

범위-----.

-----.